재정위원회 규정

제정 2022. 01. 01. 개정 2022. 10. 05.

개정 2025. 11. 0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12조의3에 의거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재정위원회의 기능) ①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3호의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대해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대신한다.

- 1. 대학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- 2. 법인 및 법인 산하기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. **다만 외부 보조** 금으로 운영되는 수탁기관은 제외한다. (개정 22.10.05, **25.11.06**)
- 3.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교육과정, 공개강좌, 산업체 위탁교육, 전공심화과정, 시간제 등록 등에 따른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,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에 관한 사항 (개정 22.10.05)
- 4.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총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
②이사회는 제1항 각호에 대한 의결안건 처리시 재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.

제3조(재정위원회의 구성) ①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.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일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일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.

- ②당연직 위원은 총 5명으로 하고, 이사장이 추천한 임원 1명과 상지대학교 부총장, 교육연구처장, 기획평가처장, 법인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.
- ③일반 위원은 총 6명으로 다음 각호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한다.
 - 1. 과반수 교수단체가 추천하는 교원 2인
 - 2.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직원 1인
 - 3.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재학생 1인

- 4. 총동문회가 추천하는 1인
- 5.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1인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직기간으로 한다.

- ②일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학생 일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③보궐 일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재정위원회 위원장 등) ①재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.

- ②재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반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하고, 그 임기는 재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다.
- ③위원장은 재정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대리한다.

제6조(회의)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. 다만 위원 장은 이사장, 총장,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 (개정 22.10.05)

제7조(소위원회)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소위원회는 재정위원회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,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.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 위원회 심의 경과와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부장을 간사로 둔다.

제9조(회의록의 작성) ①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,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
②회의 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한 경우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0조(내규) 재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.